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5호

「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: 안 제1조 ~ 제4조
- 나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, 등록관리 등을 규정함 : 안 제5조 ~ 제6조
- 다. 센터의 인력, 운영 및 위탁,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 : 안 제7조 ~ 제9조
- 라. 센터의 감독,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함 : 안 제10조 ~ 제11조
- 마.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: 안 제12조 ~ 제13조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”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.
3. “위생관리”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.
 - 가.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
 - 나.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
 - 다. 시설기준 적합 여부
4. “영양관리”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,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지원대상)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

제5조(설치 및 업무 등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어린이급식소 영양·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
2.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교육자료, 정보제공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운영
3.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, 영양·식사 지도
4. 어린이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·컨설팅
5. 우수 농·축·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
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6조(등록관리) 센터는 지원대상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,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·영양관리를 지원한다.

제7조(인력)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과 영양사, 위생사, 식품(산업)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,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8조(운영 및 위탁)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·관리한다.

②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.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. 또는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한다.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,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시 인터넷 홈 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·수탁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하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9조(경비보조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·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.

제10조(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3.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.

4. 위탁운영의 의사(意思)가 없거나 증력이 부족한 때

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

④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환수의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11조(센터 운영평가)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센터의 위탁운영,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,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